

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개정(안)

(외부의견 조회용)

2019. Sep.

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0.01.01일자 시행사항 (검사신청일 기준)

◎ IACS UR Z17(Rev.14 Mar 2019)의 개정사항 반영

(1) 2020.01.01일자 시행사항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A편 IACS Z17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</p> <p>1. ~ 4. <생략></p> <p>5. 구명설비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</p> <p>5.1 팽창식 구명뗏목, 팽창식 구명동의, 수압이탈장치, 팽창식 구조정 및 해상탈출설비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(Z17 Annex 1-5) <생략></p> <p>5.2.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및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 자동 이탈 장치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(Z17 Annex 1-13)</p> <p>5.2.1 업무범위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및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 자동 이탈 장치 점검 및 유지/보수</p> <p><새롭게 추가></p> <p>5.2.2 승인 범위 (1) 구명설비 제조자가 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록 A편 IACS Z17에 등재된 전문공급자의 승인</p> <p>1. ~ 4. <현행과 동일></p> <p>5. 구명설비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</p> <p>5.1 팽창식 구명뗏목, 팽창식 구명동의, 수압이탈장치, 팽창식 구조정 및 해상탈출설비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(Z17 Annex 1-5) <현행과 동일></p> <p>5.2.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및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 자동 이탈 장치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 <u>구명정, 구조정,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에 대한 정비, 정밀검사, 작동시험, 분해검사 및 수리에 종사하는 회사 (Z17 Annex 1-13) (2020)</u></p> <p>5.2.1 업무범위 (2020)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및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 자동 이탈 장치 점검 및 유지/보수 <u>다음에 대한 정비, 정밀검사, 작동시험, 분해검사 및 수리</u> 1. 자유낙하식 구명정을 포함한 구명정, 구조정 및 고속구조정 2.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1차 및 2차 진수수단을 포함한 구명정, 구조정, 고속구조정 및 진수식 구명뗏목의 부하상태/무부하 상태 이탈장치 및 진수장치</p> <p>5.2.2 승인 범위 (2020) (1) 구명설비 제조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</p>	<p>- IACS UR Z17(Rev.14 Mar 2019)의 개정사항 반영 = IMO Res MSC.402(96)와 MSC404(96)의 요건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것을 고려하여 UR Z17 Sec 13. “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및 데비트 진수식 구명뗏목 자동 이탈 장치 점검에 종사하는 회사”의 요건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식별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(2) 전문공급자는 SOLAS III/20 규칙을 따라야 하며,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장비에 대해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또한 제조자로부터의 승인 증서 또는 MSC.1/Circ.1277에 따른 교육 및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〈새롭게 추가〉</p> <p>(3) 제조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, 해당 장비에 대한 앞선 권한 및 또는 전문공급자로서 장기간의 경험과 확인된 전문성을 근거로 장비에 대한 전문공급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5.2.3 작업자의 자격 및 훈련 전문공급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장비에 대해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한 자격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이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(1) 작업자의 고용 및 문서화는 국가, 국제 또는 산업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제조자에 의한 인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어떠한 경우에도 인증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자 및 형식에 기반한 것 이어야 한다.</p>	<p>(2) SOLAS III/20 규칙에 따라 구명정, 구조정,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에 대한 정비, 정밀검사, 작동시험, 분해검사 및 수리에 종사하는 전문공급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장비의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해서 IMO Res. MSC.402(96).Corr.1 (annex, section 7)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.</p> <p>전문공급자는 SOLAS III/20 규칙을 따라야 하며,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장비에 대해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또한 제조자로부터의 승인 증서 또는 MSC.1/Circ.1277에 따른 교육 및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3) 그러한 승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정된 국가, 국제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서 인증된 작업자의 고용 및 문서화. 어떠한 경우에도,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제공 되어지는 각 장비의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하여 5.2.3항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 - 5.2.4항, 5.2.5항 및 5.2.6항의 규정 준수 <p>(4) 제조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, 전문공급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이전 승인 앞선 권한 및 또는 전문공급자로서 장기간의 경험과 확인된 전문성을 근거로 해당 장비에 대하여 승인 될 수 있다. 또한 전문공급자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.</p> <p>5.2.3 작업자의 인증 자격 및 훈련 (2020) 전문공급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장비에 대해 제조자 및 형식에 대한 자격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이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(1) 작업자의 고용 및 문서화는 국가, 국제 또는 산업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제조자에 의한 인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어떠한 경우에도 인증 절차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자 및 형식에 기반한 것 이어야 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p>(2) 전문공급자는 상기(1)의 작업자의 최초증서 발행을 위한 교육훈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구명정 사고의 원인들</p> <p>(나) 국제협약을 포함한 관련된 규칙 및 법규</p> <p>(다) 부하식 이탈기를 포함한 구명정의 설계 및 구조</p> <p>(라) <u>MSC.1/Circ.1206/Rev.1의 부속서 1</u>에서 정한 절차의 교육 및 실습</p> <p>(마) 적용가능한 구명정,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 이탈기의 정밀검사, 작동시험, 수리 및 분해에 대한 상세 절차</p> <p>(바) <u>MSC.1/Circ.1206/Rev.1(부속서 1의 15)</u>을 근거로 한 점검보고서 및 적합확인서의 발행절차</p> <p><u><newly added></u></p> <p>(3)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자격을 부여 받은 장비(구명정, 진수장치 및 부하식 이탈기)를 사용한 실제 검사 및 정비에 대한 기술 실습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장비의 분해, 조립, 정확한 작동 및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. 좌학 교육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선임자의 감독하에 현장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.</p>	<p><u>5.2.1항에 명시된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해당업무가 수행되어 질 장비의 각 제조자 및 형식마다 제조업체 또는 전문공급자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승인된 전문공급자는 동일한 회사에 고용된 직원에 한해서 인증이 허용된다.</u></p> <p>(2) 전문공급자는 상기(1)의 작업자의 최초증서 발행을 위한 교육훈련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(가) 구명정 및 구조정의 사고 원인들</p> <p>(나) 국제협약을 포함한 관련된 규칙 및 법규</p> <p>(다) 부하상태식 이탈장치 및 진수장치를 포함한 구명정(자유낙하식 구명정 포함), 구조정 및 고속구조정의 설계 및 구조</p> <p>(라) <u>IMO Res.MSC.402(96)/Corr.1 MSC.1/Circ.1206/Rev.1의 부속서 1의 6절</u>에서 정한 절차의 교육 및 실습</p> <p>(마) 적용 가능한 구명정(자유낙하식 구명정 포함), 구조정, 고속구조정, 진수장치 및 부하상태 이탈장치의 정밀검사, 작동시험, 수리 및 분해에 대한 상세 절차</p> <p>(바) <u>IMO Res. MSC.402(96)/Corr.1 MSC.1/Circ.1206/Rev.1(부속서 1의 15 5.3)</u>을 근거로 한 점검보고서 및 적합확인서의 발행절차</p> <p><u>(사) 승선 활동시 업무, 보전 및 안전 이슈</u></p> <p>(3)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자격을 부여 받은 장비(구명정, 진수장치 및 부하식 이탈기)를 사용한 정밀검사, 작동시험, 정비 수리, 분해에 대한 실제 기술 실습을 실제 검사 및 정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장비의 분해, 조립, 정확한 작동 및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. 좌학 교육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인원의 선임자의 감독 하에 현장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(4) <u>최초증서 발행 또는 갱신 증서 발행 시에 전문공급자는 각 작업자가 자격을 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가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〈새롭게 추가〉</p> <p>(5) <u>증서의 갱신을 위해 전문공급자에게 재교육이 요구 될 수 있다.</u></p> <p>5.2.4 참조 문서 전문공급자는 다음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1) <u>MSC.1/Circ.1206/Rev.1(구명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)</u></p> <p>(2) <u>MSC.1/Circ.1277(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점검 업자의 승인에 관한 권고)</u></p> <p>(3) <u>IMO Res.A.689(17)(1999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구명설비의 점검에 관한 권고)</u></p> <p>〈새롭게 추가〉</p>	<p>(4) <u>최초증서 발행 또는 갱신 증서 발행 시에 전문공급자는 각 작업자가 자격을 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가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작업자에 대한 증서를 발급하기 전, 역량평가는 자격인증이 되어야 하는 작업자가 장비를 사용하여 만족스럽게 완료되어야 한다.</u></p> <p>(5) <u>훈련 및 역량평가가 완료되면 자격 수준과 인증 범위 (즉, 장비의 제조자 및 형식, 구체적 특정업무(연차 정밀검사 및 작동시험; 5년차 정밀검사, 분해검사, 과부하작동시험; 수리)가 증서에 언급되어야 한다). 만료일은 인증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년 이어야 한다. 모든 인증서의 유효성은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시 중지되며 추가 역량평가 후에 만 유효성이 다시 확인된다.</u></p> <p>(6) <u>증서의 갱신을 위해 전문공급자에게 재교육이 요구 될 수 있다.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식별된 경우, 해당 교육 완료 후 추가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.</u></p> <p>5.2.4 참조 문서 <u>(2020)</u> 전문공급자는 다음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1) <u>MSC.1/Circ.1206/Rev.1(구명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) IMO Res. MSC.402(96)/Corr.1(구명정, 구조정, 진수장치 및 이탈장치에 대한 정비, 정밀검사, 작동시험, 분해검사 및 수리 요건)</u></p> <p>(2) <u>MSC.1/Circ.1277(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 점검 업자의 승인에 관한 권고)</u></p> <p>(2) <u>IMO Res.A.689(17)(1999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구명설비의 점검에 관한 권고)</u></p> <p>(3) <u>IMO Res. MSC.81(70)(구명설비의 점검에 관한 권고)</u>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<p>(4) 부하식 이탈장치의 분해, 조정을 포함한 수리 작업을 위한 장비 제조자의 특별 지침</p> <p>(5)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의 형식 승인 증서</p> <p>5.2.5 장비 및 설비 전문공급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1) 선상에서의 작업을 위한 휴대식 도구를 포함한 충분한 도구 및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장비</p> <p>(2)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의 정비를 위해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의 장비 및 부품</p> <p>(3) 부하식 이탈장치의 분해, 조정을 포함한 정비 작업을 위해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 또는 지정하는 교체 부품</p> <p>5.2.6 보고 (2020) 보고서는 MSC.1/Circ.1206/Rev.1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따라야 한다. 수리, 검사 및 정기적 점검이 완료되었을 시에 전문공급자는 구명정 일체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.</p> <p>5.2.7. 기타 요건(절차서)</p> <p>(1) 전문공급자는 장비 정비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가져야 한다. 절차서는 정비 및 수리 시 장비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의 성격 및 범위를 기록하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자료는 우리 선급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(2) 전문공급자는 제조자에 의해 승인된 장비의 특별구조 및 모델을 정비하는 권한 또는 면허가 주어진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<이하 생략></p>	<p>(4) 부하식 이탈장치와 Davitwinch의 분해, 조정을 포함한 수리 작업을 위한 장비 제조자의 특별 지침 (최신화, 개정 및 안전 고지 포함).</p> <p>(5)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의 형식 승인 증서</p> <p>5.2.5 장비 및 설비 전문공급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(1) 선상에서의 작업을 위한 휴대식 도구를 포함한 충분한 도구 및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장비</p> <p>(2) 구명정, 진수장치, 부하식 이탈장치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해 제조자의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의 적절한 장비 및 부품 (2020)</p> <p>(3) 부하식 이탈장치의 분해, 조정을 포함한 정비 작업을 위해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 또는 지정하는 교체 부품</p> <p>5.2.6 보고 (2020) 보고서는 IMO Res.MSC.402(96)/Corr.1(annex, paragraph 5.3) MSC.1/Circ.1206/Rev.1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따라야 한다. 수리, 정밀검사 및 정기적 점검이 연차서비스가 완료되었을 시, 예 업무를 수행한 전문공급자는 구명정 일체가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. 자격 증명 및 권한(해당되는 경우)과 관련된 유효한 문서 사본이 이 확인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5.2.7. 기타 요건(절차서)</p> <p>(1) 전문공급자는 장비 정비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가져야 한다. 절차서는 정비 및 수리 시 장비에서 발견된 손상 및 결함의 성격 및 범위를 기록하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자료는 우리 선급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(2) 전문공급자는 제조자에 의해 승인된 장비의 특별구조 및 모델을 정비하는 권한 또는 면허가 주어진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<이하 현행과 동일></p>	<p>- 5.2.7항 기타 요건은 이미 유사한 문구가 전문공급자승인지침 제1절 5.(1)(가)(g) 및 (j)에 있으므로 삭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- by 협약업무팀 (19. 5.15) 및 5.(1)(가)(d)에 언급됨</p>